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시료를 저장·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73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환경시료의 종류, 환경시료은행의 추가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립생태원을 추가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안 제10조2 신설)

- 1) 환경시료의 종류, 환경시료은행의 추가사업 및 업무수행기관 등을 정함

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추가(안 제12조)

- 1)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국립생태원을 추가하고자 함

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 신설)

- 1)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유래물 등의 시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시료
 2.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관련 시료
 3.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관련 시료
 4.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관련 시료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건강모니터링 및 건강영향조사 관련 시료
 6. 환경시료 확보·저장·활용 등의 연구개발 관련 시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료
- ② 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저장·활용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환경시료의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사업
3. 환경시료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사업
4.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저장·활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시료은행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제19조의 제목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유래물 등의 시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말한다.</u> <u>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시료</u> <u>2.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관련 시료</u> <u>3.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관련 시료</u> <u>4.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관련 시료</u> <u>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u>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건강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조사 관
련 시료

6. 환경시료 확보·저장·활용
등의 연구개발 관련 시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료

② 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
다.

1. 환경시료의 확보·저장·활
용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환경시료의 활용을 위한 기
반 조성 지원사업

3. 환경시료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사
업

4.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
저장·활용 등을 위하여 환경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
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
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한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③ (생략)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신설>

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시료은행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 · 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685